

의안 번호	제2441호 ~ 2442호
----------	-------------------

2023. 11. 29.(수) 10:0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
---

# 검 토 보 고 서

안건 : 2건(개정규칙안 1, 개정조례안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광수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1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4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안 제9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4.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제64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7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2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나철원 의원)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경조사 휴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4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안 제9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4.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제64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7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경조사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443호 ~ 제2455호
----------	--------------------

2023. 11. 30.(목) 10:0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자위

# 검 토 보 고 서

안건 : 13건(조례안10,동의안2,계획안1)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 목 차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3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 5
-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2
-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16
-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3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향후 기대되는 자에 대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장성군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
- 명예군민증을 수여대상자로 추천받은 자에 대해 관련 조례에 의거 장성군의회 동의 받도록 함.

##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

연번	성명	직위/직업	수여사유
1	남성현 (남, 65세)	산림청장	산림청장으로서 다양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자원분야 및 휴양분야 등 우리군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2	박형주 (남, 59세)	아주대 교수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와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는 향후 우리군 정책 수립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3	오영훈 (남, 54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장성군과 제주도간의 지역농·특산물 판로 확보와 교류 활성화 등 지역상생에도모함.

## 4. 주요내용

○ 수여일시 : 2023. 12월 중

○ 수여기준

- 장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재외동포, 향우 및 타시군 출신 인사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부서별 수여 대상자 추천 : 2023. 10. 10. ~ 10. 19.
- 군정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및 심의 : 2023. 11. 7.
- 장성군의회 수여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2023. 11. 10. ~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 2023. 12월

○ 명예군민 대우

- 장성군 명예군민증서(패) 수여
- 지역 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
-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 초빙
- 군정 소식지 제공 등

## 5. 관련법령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1조 및 제2조

##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장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대상자에 대해 장성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것으로써,

○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7.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4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출연금 지원계획

부서명	출연기관	2024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6개 기관	4,818,424		
일자리경제실	전남신용보증재단	51,000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나노바이오 연구센터)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용한 산업 기반조성 지원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총 무 과	(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30,000	대북 교류협력사업 통일정책연구, 통일이식 고취운동 지원	「장성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5,320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전국자치체공동사업)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농업유통과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700,000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푸드플랜 사업 총괄 운영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3,932,104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장성군 출연기관 6개 기관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5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MOU 체결로 감면 대상 조문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감면 대상 조문 개정
  - (현행)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인 사람
  - (개정)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 및 상생협력 MOU 지방자치단체인 사람
- 북상휴양관, 피톤치드 체험랜드,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숙박시설) 사용료의 일부반환 비율 조문 개정
  - (현행)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70%, 50%, 30% 반환
  - (개정)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90%, 80%, 70% 반환

## 4. 관련법령

-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 MOU 체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연접 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MOU 체결로 지방 소멸 공동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 시설의 이용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6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홍길동 테마파크 사용료의 일부반환 비율 조문 개정
  - (현행)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70%, 50%, 30% 반환
  - (개정)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90%, 80%, 70% 반환

##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기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7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 중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추가 사항을 반영하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장성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 (현행)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 (개정)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8조제4항4호)
  - (현행)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 (개정) “삭제”

## 4.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 사항과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8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제9조, 제1~2항)
  - (현행) “지원협의회” → (개정) “처우개선위원회”
  - (현행) “지원협의회” → (개정) “(위원회)”
-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위원회 설치)) 제3항
  - (현행) “지역협의회” → (개정) “(위원회)”
  -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4.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49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등(안 제1조~제4조)
- 예산확보, 지원중단, 환수 등(안 제5조~제9조)

## 4. 법적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제9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0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소외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함.

##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 업무의 위탁,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1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안 제16조 신설)
  -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 주관
  -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지원

## 4.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2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3. 7. 4.)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 (개정) 장성군 환경 기본 조례
- 환경계획 수립 주기 변경(안 제8조제1항)
  - (현행) 10년마다 수립
  - (개정) 5년마다 수립
- 환경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9조 ~ 25조)

## 4.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6조의2, 제58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칭변경, 환경계획 수립주기 변경, 환경정책위원회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3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전 조례 폐지 후 신규 조례 제정 필요

## 3. 주요내용

- 이전 조례 폐지(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안 제4조 ~ 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7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안 제8조 ~ 제9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성장위원회(안 제10조 ~ 제18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부분별 시책(안 제19조 ~ 제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26조 ~ 제31조)

## 4. 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법률 제18469호)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장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전 조례 폐지 후  
    신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2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4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함

###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제외 항목 추가(안 제2조제2항)
- 특별공적 및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 변경(안 제2조제3항, 안 제6조)
  - (현행) 장성군 인사위원회
  - (개정)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항)
  - (현행) 4급이상 공무원
  - (개정) 5급이상 공무원

### 4.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147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제한 기준, 지급 대상, 심의주체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5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써,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0건(건물 7, 토지 3)

(단위 : m<sup>2</sup>,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7개 사업		51,391	25,442,060	
건물	장성군 청년센터 건물 신축	장성읍 영천리 1486-4 외 1필지	600	2,500,000	
건물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물 신축	장성읍 장안리 29-2 외 3필지	401	5,210,000	기부채납
토지			2,423	60,707	
건물	장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삼계면 사창리 159-2 외 2필지	1,350	7,600,000	
토지			3,497	700,000	
건물	삼서면 공중목욕장 신축	삼서면 대곡리 929-2	330	2,000,000	
건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동화면 남평리 257-1 외 1필지	900	5,180,000	
건물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건물 신축	남면 월곡리 1354 외 2필지	513	950,000	
건물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조성	북하면 신성리 145 외 80필지	150	452,000	
토지			41,227	789,353	

##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0조의2, 제16조

##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456호 ~ 제2466호
----------	--------------------

2023. 11. 29.(수) 10:3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건위
---

#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11건(승인안 9, 개정조례안1, 제정조례안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광수



# 목 차

-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3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4
-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5
- 북하 성암지구 대구환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7
-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9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11
-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15
-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17
-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19
-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1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6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상 상황 및 축제기간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되어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23,400백만원(국비 6억, 도비 146.1억, 군비 81.9억)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2019 ~ 2023(5년) / 변경 2019 ~ 2024(6년)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사업추진 지연되어 금년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추진코자 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7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5,868백만원(국비 4,108, 군비 1,76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 2017 ~ 2023(7년) / 변경 - 2017 ~ 2024(8년)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정비사업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금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므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8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방하천인 개천에 인접한 저지대 농경지로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7,509백만원(재원 - 국비 100%)
- 계속사업비 : 7,509백만원
- 사업기간 : 2023년~2026년(4년)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59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2023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농촌협약 조건(안 제8조)
-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구성(안 제16조)
-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17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안 제23조)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2023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60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2020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1,964백만원(군비 1,964)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 2020 ~ 2023(4년) / 변경 - 2020 ~ 2024(5년)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2020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므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61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5,600, 군비 2,40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 2018~2023(6년) / 변경 - 2018~2024(7년)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62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장성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원장 임명,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2항)
- 심의·자문의 대상 및 규모 신설 (안 제13조의2)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안 별표2)
-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절차와 서식 신설(안 제17조제5항) 및 (안 별지 제2호서식)

## 4. 관련근거

-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63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당초 31,000백만원 【재원-군비 100%】  
                  변경 47,000백만원 【재원-군비 100%】
- 계속사업비 : 당초 : 31,000백만원 【재원-군비 100%】  
                  변경 : 47,000백만원 【재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변경없음)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 5.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사항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등을 반영하여 계속비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64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사업 확정되어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2,631백만원 【재원 - 국비 63% 도비 11%, 군비 26%】
- 계속사업비 : 2,631백만원(국비 16.5억 도비 3억, 군비 6.8억)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합 계	2,631	
2023년	25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년	752	• 공사 발주·실시 등 사업 추진 (노후주택 정비 등)
2025년	789	• 사업 추진(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2026년	837	• 사업 추진(방범·방재·위생시설 확충)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2023년 전라남도로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0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65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 금년까지 총사업비 9,000백만원 중 4,350백만원이 반영되어 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9,000백만원 【재원-도비 55%, 군비 45%】 (변경없음)
- 계속사업비 : 9,000백만원(도비 49.5억, 군비 40.5억)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 2020 ~ 2023(4년)  
- 변경 : 2020 ~ 2026(7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합 계	9,000	
2020년	55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1년	1,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22년	1,000	• 하천점용(기본계획) 협의

2023년	1,800	• 하천점용허가 승인, 지방정원 조성사업 착공
2024년	3,000	•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2025년	1,000	•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2026년	650	• 지방정원 등록 및 유지관리

####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 5.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023년까지 총사업비 9,000백만원 중 4,350백만원이 반영되어 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66호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장)
- 회부일자 : 2023. 11. 13.

## 2. 제안이유

-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3조(설치) 특별회계 설치 운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는 특별회계 설치로 구분 관리
- 제5조(세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 4.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의2
- 「지방재정법」 제9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2469
----------	------

2023. 12. 4.(월) 10:00
제355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

# 2024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 보고 순서

<b>1. 2024년도 예산편성 개요</b>	-----	2
① 지방재정 운용 여건	-----	2
② 예산편성 방향	-----	4
<b>2. 예산안 규모</b>	-----	5
① 총괄	-----	5
② 세입	-----	5
③ 세출	-----	6
① 분야별 현황	-----	6
② 부서별 현황	-----	7
<b>3.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b>	-----	8
①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	8
②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	11
<b>4. 전문위원 검토의견</b>	-----	14

#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

## 1. 2024년도 예산편성 개요

### 1 지방재정 운용 여건

#### ■ [세입여건]

-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결손이 심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따라 **이전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첨단3지구 상가 등 분양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체수입) 첨단3지구 개발로 인한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32억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첨단3지구 상가 분양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징수교부금(+2억원)** 및 **조정교부금(+11억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27억원)**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전수입) 내국세 징수실적 저조 및 2022년부터 종부세 세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통교부세(△243억원)** 및 **부동산교부세(△102억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국고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쳐 보조금 수입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대폭 감소(△359억원)**할 것으로 예상됨

#### ※ 2024년 정부예산 세입(안)

(단위 : 조원, %)

구분	'23년 예산(A)	'24년(안) (B)	증감 (B-A)	%
◇ 총수입	625.7	612.1	△13.6	△2.2
· 국세 수입	400.5	367.4	△33.1	△8.3
· 국세외 수입	225.2	244.7	19.5	8.7
◇ 총지출	638.7	656.9	+18.2	2.8

## ■ [세출여건]

- 민선8기 핵심사업의 본격 추진, 2024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부예산 증액으로 인한 군비 부담금 증가, 2025년 전남도민 체전 개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폭적인 지출 요인 발생
  -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과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확대, 청년·청소년·장애인을 위한 공간 조성 사업 투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 기초연금 증액, 장애인 등 지원액 증가에 따른 군비 대응 비용 증가
  - 2025년 전남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증가
  -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 비용 발생
  - 청운지하차도, 장성정수장 등 미래성장 기반시설 지속 투자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한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 ■ 2024년 정부 예산안 현황

- 세출편성 : 656.9조 원(전년대비 18.2조 원 2.8% 증)
- 기본방향 :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재정정상화로 예산의 체질 개선,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 분야별 자원배분 증감율(%) : 보건·복지·고용(7.5% / 16.9조), 외교통일(19.5% / 1.2조), 공공질서안전(6.1% / 1.4조), 산업·중소기업·에너지(4.9% / 1.3조), R&D(△16.6% / △5.2조), 교육(△6.9% / △6.6조)
- 투자중점 : 4대 핵심 13대 투자 중점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등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등
  -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투자 활성화 등
  -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등



## 2 예산편성 방향

목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구현

기본  
방향

- 건전재정 기초 견지 하에 민선8기 공약사업 실현
-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투자

중점

### 군민의 삶이 행복한 든든한 복지

- 장애인 주간보호·직업자활 시설 설치
- 어르신의 건강 및 위생 향상을 위한 효도권 확대
- 노인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문불여장성 미래 인재육성

-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청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
- 청소년 사회보장을 위한 꿈키움 바우처 지원
-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 2025년 전남도민체전 차질없는 준비

-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정비
- 2025년 도민체전 성공을 위한 프레대회 개최

### 미래성장 기반시설 지속 투자

-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재정  
운용

- 건전재정 기초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 양질의 공모사업 및 국·도비사업 확보 노력 강화
- 일반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정비로 재정 효율성 강화

## 2. 예산안 규모

### 1 총괄

□ 편성안 : **5,268억원** (2023년 대비 4억원 감 / △0.09%)

(단위:억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비 고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268	5,272	△4	△0.09%	
일반회계	5,181	5,183	△2	△0.05%	
특별회계	87	89	△2	△2.29%	

(참고) 2023년 예산 편성규모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편성규모 (증액)	5,272	5,653 (331↑)	6,109 (456↑)	5,785 (324↓)

### 2 세입

(단위:억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합 계	5,268	5,272	△4	
지방세	433	426	7	자동차세 89, 지방소비세 106, 지방소득세 123
세외수입	170	186	△16	상수도사용료(특) 29,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47, 정기예금이자 34,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
지방교부세	2,378	2,699	△321	보통교부세 2,107, 특별교부세 2, 부동산교부세 189, 지방소멸대응기금 80
조정교부금등	94	80	14	진원면 상림리 양유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특조)
보조금	1,986	1,664	322	국고 1,575, 도비 4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	217	△10	순세계잉여금 162, 전입금 36

### 3 세출

####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26,792	100	527,246	100	△454	△0.09
일반공공행정	17,919	3.40	19,662	3.73	△1,743	△8.86
공공질서및안전	33,129	6.29	18,960	3.60	14,169	74.73
교육	5,693	1.08	4,206	0.80	1,487	35.35
문화및관광	25,719	4.88	30,143	5.72	△4,424	△14.68
환경	42,799	8.12	43,636	8.28	△837	△1.92
사회복지	125,484	23.82	114,328	21.68	11,156	9.74
보건	7,952	1.51	14,082	2.67	△6,130	△43.53
농림해양수산	98,764	18.75	103,871	19.70	△5,107	△4.9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035	3.80	18,848	3.57	1,187	6.30
교통및물류	19,644	3.73	27,844	5.28	△8,200	△29.45
국토및지역개발	55,787	10.60	58,096	11.02	△2,309	△3.97
예비비	3,534	0.67	5,020	0.95	△1,520	△30.28
기타	70,333	13.35	68,550	13.00	1,817	2.65

##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26,792	100	527,246	100	△454	△0.09	
기획실	5,840	1.11	7,512	1.42	-1,706	△22.72	
일자리경제실	16,839	3.20	14,185	2.69	2,654	18.71	
자치행정국	소계	229,970	43.65	223,671	42.42	6,299	28.82
	총무과	69,511	13.20	68,527	13.00	984	1.44
	민원봉사과	1,848	0.35	2,575	0.49	-727	△28.23
	문화관광과	15,059	2.86	18,251	3.46	-3,192	△17.49
	주민복지과	34,749	6.60	32,683	6.20	2,066	6.32
	가족행복과	92,473	17.55	83,042	15.75	9,431	11.36
	환경과	13,702	2.60	15,494	2.94	-1,792	△11.57
	세무회계과	2,628	0.50	3,099	0.59	-471	△15.18
건설산업국	소계	184,334	34.99	197,079	37.38	-12,745	6.47
	재난안전과	35,069	6.66	28,544	5.41	6,525	22.86
	건설과	27,581	5.24	53,493	10.15	-25,912	△48.44
	도시재생과	22,875	4.34	8,078	1.53	14,797	183.19
	산림편백과	15,385	2.92	22,774	4.32	-7,389	△32.45
	교통에너지과	20,178	3.83	19,908	3.78	270	1.35
	농업축산과	54,330	10.31	49,819	9.45	4,511	9.05
	농업유통과	8,916	1.69	14,463	2.74	-5,547	△38.35
보건소	소계	9,137	1.74	14,895	2.82	-5,758	62.19
	보건정책과	4,138	0.79	9,621	1.82	-5,483	△56.99
	건강증진과	4,999	0.95	5,274	1.00	-275	△5.20
농업기술센터	소계	7,346	1.39	7,097	1.35	249	7.49
	농업지원과	3,592	0.68	3,679	0.70	-87	△2.36
	농업기술과	3,754	0.71	3,418	0.65	336	9.85
체육사업소	9,703	1.84	4,405	0.84	5,298	120.26	
맑은물관리사업소	52,720	10.01	47,833	9.07	4,887	10.22	
평생교육센터	6,204	1.18	5,361	1.02	843	15.72	
의회사무과	841	0.16	920	0.17	-79	△8.63	
읍면	3,858	0.73	4,288	0.81	-396	△9.25	

### 3.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 ①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 【복지/보건】 1,334억원(50억 증)

기초연금 432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9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연금 72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1억, 가족센터 건립 25억,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 36억, 경로당 지원 26억,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29억, 노인 효도권 지원 33억,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3, 아동수당 급여 16억,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23억,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12억,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8억,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 신생아양육비 지원 5억

##### 【농림/축산/임업】 988억원(51억 감)

공익직접지불금 173억, 농어민 공익수당 54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7억, 벼 경영인안정대책비 19억, , 전략작물직불제 15억,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18억,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50억,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 12억, 유기질 비료지원 15억, 조사료 생산 지원 17억, 학교급식 지원 15억, 청년농업인 육성 4.7억,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9.5억, 사방사업 13억, 산불예방 숲가꾸기 19억, 임도시설 9억 등

##### 【지역개발】 558억원(23억 감)

청운지하차도 개설 161억,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 11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23억,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130억, 소규모 공공하수도(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0억,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 46억, 농업기반조성 48억, 농업용수 개발 9.7억, 농촌정주기반조성(주민편익및지역개발 사업) 59억, 기초생활거점조성(진원) 18억, 마을만들기 27.5억, 기초생활인프라-생활환경정비 15억, 도로건설 및 관리 58억 등

**【환경】 428억원(8억 감)**

황룡강 생태관리 26억,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하수도 및 오폐수 관리 31억, 공공하수·폐수 처리 시설 운영관리 67억,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87억,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23억,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10억,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3.6억,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10억, 전기 화물차(소형) 보급사업 13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11억,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0억, 방치폐기물 처리 2억 등

**【문화/체육/관광】 257억원(44억 감)**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8억, 지정 문화재 보존 등 31억, 지역축제 운영 14억, 관광자원 홍보 5억,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30억,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 5억,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3.5억,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 2.2억, 물통골폭포 관광자원화사업 9억,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사업 11.5억,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 18억, 관광지 운영 관리 17억, 관광 자원 관리 운영 5.5억, 체육시설 운영·유지관리 14억, 파크골프장 신규조성사업 41억, 상무평화 공원 축구장 개보수 10억, 위라벨 돔 경기장 시설개선 6억,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4억, 체육단체 및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7.5억,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3억 등

**【일반공공행정/교육】 236억원(3억 감)**

공무원 후생복지 24억, 이장 활동보상 14억,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2억,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1.2억,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6.9억, 청년문화 복지카드 5억, 청년센터 건립 16억, 행정정보화 운영 18억, 군정홍보 등 5억, 인구늘이기 시책 장려금 지원사업 5억, 장성장학회 운영 39억,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3.4억, 공간정보 DB 구축 및 관리 1.9억 등

**【교통/물류】 196억원(82억 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9억,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대중교통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2억, 행복(100원)택시 지원 3.2억, 농촌지역 균형  
개발 65억, 도로 유지관리 28억,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11억,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33억 등

**【공공질서/안전】 331억원(142억 증)**

주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11.4억,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285억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억원(12억 증)**

일자리지원 29억, 기업성장 지원 30억,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8.5억, 초임계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 사업 20억,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34억,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10억,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 5억, 장성상품권 발행 21억, 사회적기업  
육성 5.8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4억 등

## 2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합계			189,546	
기획실	자체	군정 홍보활동 강화	473	
일자리경제실	자체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2,048	
	자체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	522	
	자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850	
	보조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1,800	기금
	보조	청년센터 건립	1,578	
	보조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2,000	
민원봉사과	자체	지적재조사 조정금	150	
문화관광과	자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500	
	자체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400	
	자체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330	
	자체	관광자원(서울, 광주 등) 홍보	510	
	보조	장성호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	350	
주민복지과	자체	참전유공자 수당	920	
가족행복과	자체	노인 효도권 지원	3,273	
	자체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자 활동비 등(공익형)	1,671	
	자체	청소년 수련관 운영	548	
	보조	가족센터 건립	2,470	기금
	보조	기초연금	43,210	
	보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설계용역)	300	
환경과	자체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	2,300	
	자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1,006	
재난안전과	자체	하천제방정비사업	1,033	
	자체	방법용 CCTV 설치	200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재난안전과	자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10	
	자체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100	
	보조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350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8,514	
	보조	소하천 정비사업	300	
	보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외룡1지구, 내계2지구)	1,200	
건설과	자체	삼계면 신기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	1,000	
	자체	도로보수	600	
	자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400	
	자체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700	
	자체	한국농어촌공사구역내 농업기반시설 정비	600	
	자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0	
	자체	주민편익사업	1,500	
	자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25	
	보조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0	
도시재생과	자체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16,130	
	자체	성산초~성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자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600	
	보조	진원면 역사탐방 생태누리길 조성사업	1,000	
산림편백과	자체	잔디예지물 지원사업	150	
	보조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3,000	
	보조	삼서면(대곡리) 실외정원 조성	500	
교통에너지과	자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900	
	보조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3,300	
농업축산과	보조	축산악취개선사업	600	
	보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5,000	기금
	보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7,282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농업유통과	자체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700	
	자체	무상급식 지원	602	
	보조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868	
	보조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	622	
보건정책과	보조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58	
건강증진과	보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06	
농촌지원과	보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900	
농업기술과	보조	농산물안전분석실 조성	600	
체육사업소	자체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	60	
	보조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조성사업(토지매입비 등 포함)	4,095	
	보조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개보수	1,000	
	보조	위라벨 돔 경기장 시설개선	600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	장성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대행)	2,013	
	자체	삼계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대행)	1,041	
	자체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대행)	913	
	자체	장성하수처리시설 섬유여과설비 개선공사	1,200	
	자체	나노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대행)	876	
	자체	장성읍 노후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500	
	보조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712	
	보조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760	
	보조	염치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485	
평생교육센터	자체	장성장학회 출연금	3,932	

## 4.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68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272억원보다 0.09%인 4억원이 감액 편성됨.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억이 감액된 5,1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이 감액된 87억원임.
- 2024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23년도에 비해 8.22%, 세외수입 3.2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잉여금 등) 3.93%로 편성하였고,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023년도 2,699억원보다 11.90% 감액된 2,378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5.62%인 321억원이 증가한 1,575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0.16% 증가한 410억원임.
-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0.67%인 35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정부의 재정 기초 방침에 따라 상당부분 감액된 가운데 국고보조금 321억이 증액된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보여짐.
- 세출예산의 대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5,181억원의 86.1%인 4,458억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유지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금번 예산안은 군민 행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 여건을 감안한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 조정이라는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하며,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생활 밀착형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 개발 사업 및 주민과 밀접한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 소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의 안 포 인 제	2470
-----------------------	------

2023. 12. 4.(월). 10:00
제35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 윤 석

#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 1. 기금현황

○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조성액은 41,72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 1>과 같음.

<표 1> 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2024년도 조성액	비고
	8개 기금			41,724	
기획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31,865	
일자리경제실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국민보건증진	85	
총무과	고향사랑기금	2023	기부금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	646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2002	사회복지 증진	3,322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01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1,765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2002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400	
환경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20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등	40	
체육사업소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진흥발전	1,601	

## ② 기금운용계획 총괄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종의 기금운용(수입·지출) 계획은 44,863백만원으로 각 기금별 내역은 <표 2>와 같음.

###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수입·지출은 32,801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회수 31,722백만원, 예수금 167백만원, 이자수입 912백만원이며
- 지출은 예치금 31,865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936백만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운용할 계획임.

### ○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은 92백만원으로

- 수입은 도비 보조금 6백만원, 예치금 회수 84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기타수입 0.5백만원이며,
-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6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86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은 811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 회수 400백만원, 이자수입 11백만원, 기타수입 400백만원이며,
- 지출은 자치분권 및 교류협력 지원 등 165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646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지출은 3,451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회수 3,310백만원, 이자수입 96백만원, 전입금 35백만원, 기타수입 10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장애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129백만원, 예치금 3,322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지출은 1,895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회수 1,749백만원, 이자수입 16백만원, 전입금 130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130백만원, 예치금 1,765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은 2,774백만원으로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16백만원, 예치금회수 2,338백만원, 이자수입 20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에 374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2,400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지출은 160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회수 140백만원, 기타수입 20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에 120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40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은 2,880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회수 2,836백만원, 이자수입 44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체육선수 육성에 94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185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1,601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 2023년 자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상환	예치금	기타
8개 기금	44,864	581	6	167	42,579	1,100	431	44,864	1,018	0	936	41,724	1,185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2,801	0	0	167	31,722	912		32,801	0	0	936	31,865	0
식품진흥기금	92	0	6	0	84	1	0.5	92	6			85	0
고향사랑기금	811	0	0	0	400	11	400	811	165			646	0
사회복지기금	3,451	35	0	0	3,310	96	10	3,451	129			3,322	0
폐기물처리 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895	130	0	0	1,749	16		1,895	130			1,765	0
재난관리기금	2,774	416	0	0	2,338	20		2,774	374			2,40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60	0	0	0	140	0	20	160	120			40	0
체육진흥기금	2,880	0	0	0	2,836	44		2,880	94			1,601	1185

###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 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2024년도 기금 운영계획 금액은 448억 6천 3백만원이며, 이중 7%인 31억 3천 9백만원이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함.
- 나머지 금액 대부분인 417억 2천 4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다만,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임.
-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 특성상 고유 목적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부 기금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 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기금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2467
----------	------

2023. 12. 14.(목) 10:0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결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3. 12. 13.

## II.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편성개요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함.

### 2.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785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6,108억 9천 4백만원 보다 323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됨
- 그 중 일반회계는 5,676억 9천 2백만원으로 342억 6천 3백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08억 3천 5백만원으로 18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가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b>계</b>	<b>578,527</b>	<b>610,894</b>	<b>△32,367</b>	<b>△5.30</b>	
<b>일 반 회 계</b>	<b>567,692</b>	<b>601,956</b>	<b>△34,263</b>	<b>△5.69</b>	
<b>특 별 회 계</b>	<b>10,835</b>	<b>8,938</b>	<b>1,897</b>	<b>21.22</b>	
의료급여사업	743	763	△20	△2.65	
공공실버주택	1,269	1,284	△15	△1.17	
건축진흥	202	202	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228	228	0	0	
주차장 운영	230	248	△18	△7.26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90	90	0	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32	32	0	0	
드림빌	3,250	935	2,315	247.61	
주민소득지원 기금	436	436	0	0	
상수도사업	4,355	4,720	△365	△7.74	

(참고) 2022년 예산 편성규모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4회추경
편성규모 (증액)	4,881	5,222 (341↑)	5,719 (497↑)	5,882 (163↑)	6,016 (134↑)

## 1 일반회계

-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19억 5천6백만원보다 342억 6천 3백만원이 감액(5.69%)된 5,676억 9천2백만원임.
- 세입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8억 7백만원, 세외수입은 5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90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은 13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58억 1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b>계</b>	<b>578,528</b>	<b>100</b>	<b>610,894</b>	<b>△32,367</b>	<b>△5.30</b>	
지 방 세	43,434	7.51	42,627	807	1.89	
세 외 수 입	24,693	4.27	18,942	5,751	30.36	
경상적 세외수입	10,028	1.73	10,252	△224	△2.18	
임시적 세외수입	13,015	2.25	7,824	5,191	66.3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50	0.29	866	784	90.58	
지 방 교 부 세	241,568	41.76	280,601	△39,033	△13.91	
조 정 교 부 금 등	10,185	1.76	8,850	1,335	15.08	
보 조 금	184,183	31.84	189,628	△5,444	△2.87	
국 고 보 조 금 등	131,717	22.77	137,536	△5,818	△4.23	
시·도비보조금 등	52,466	9.07	52,092	374	0.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465	12.87	70,246	4,218	6.00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은

- 먼저, 자체사업으로 호우피해복구 2억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 또한, 보조사업으로는 북부권 어린이집 신축(키즈레일) 8천3백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4천8백만원, 재해피해 특별위로금 3천9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9천3백만원, 이상저온 및 서리 농업피해 복구지원 1억7천2백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천만원 등이 계상됨.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578,527	100	610,894	△32,367	△5.30
인 건 비(100)	61,027	10.55	62,786	△1,759	△2.80
물 건 비(200)	35,984	6.22	38,473	△2,489	△6.47
경 상 이 전(300)	208,576	36.05	217,869	△9,293	△4.27
자 본 지 출(400)	257,217	44.46	277,341	△20,124	△7.26
용자 및 출자(500)	432	0.07	432	0	0.00
내 부 거 래(700)	4,319	0.75	2,097	2,222	105.95
예비비및기타(800)	10,972	1.90	11,896	△924	△7.76

## ②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경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9억 3천 8백만원 보다 18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108억 3천 5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1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에서 2억 7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b>계</b>	<b>10,835</b>	<b>100</b>	<b>8,938</b>	<b>1,897</b>	<b>21.22</b>	
세 외 수 입	6,405	59.11	4,269	2,135	50.01	
경상적 세외수입	3,243	29.93	3,626	△383	△10.58	
임시적 세외수입	2,946	27.19	427	2,519	589.9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6	1.99	216	0	0	
조 정 교 부 금 등	35	0.32		35		순증
보 조 금	102	0.94	97	5	4.94	
국고보조금 등	85	0.78	80	4	4.96	
시·도비보조금 등	17	0.16	17	0.8	4.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93	39.63	4,572	△278	△6.08	
보전수입등	3,352	30.94	3,572	△220	△6.16	
내부거래	941	8.69	1,000	△58	△5.80	



- 세출예산은 물건비에서 4억 4천 6백만원이 감액되고,  
내부거래에서 23억이 증액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액	증감율
계	10,835	100	8,938	1,897	21.22
인 건 비(100)	285	2.63	285	0	0
물 건 비(200)	2,975	27.46	3,421	△446	△13.04
경 상 이 전(300)	769	7.10	789	△20	△2.56
자 본 지 출(400)	2,237	20.65	2,257	△20	△0.89
용자및출자(500)	432	3.99	432	0	0
내 부 거 래(700)	2,526	23.30	226	2,300	1019.45
예비비및기타(800)	1,611	14.87	1,528	83	5.43

### III.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78,527	100	610,894	100	△32,366	△5.30
일반공공행정	21,929	3.79	23,328	3.82	△1,399	△5.99
공공질서및안전	28,306	4.89	28,422	4.65	△116	△0.41
교육	5,035	0.87	6,188	1.01	△1,153	△18.64
문화및관광	34,070	5.89	35,186	5.76	△1,116	△3.17
환경	44,661	7.72	45,711	7.48	△1,050	△2.30
사회복지	120,496	20.83	125,123	20.48	△4,627	△3.70
보건	13,541	2.34	13,635	2.23	△94	△0.69
농림해양수산	117,717	20.35	118,275	19.36	△558	△0.47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2,000	3.80	22,259	3.64	△259	△1.16
교통및물류	33,172	5.73	36,527	5.98	△3,355	△9.19
국토및지역개발	68,021	11.76	81,749	13.38	△13,728	△16.79
예비비	2,547	0.44	5,740	0.94	△3,193	△55.62
기타	67,032	11.59	68,751	11.25	△1,719	△2.50

#### □ 재원별 현황

○ 자체사업 : △227억원(70%)

○ 보조사업 : △97억원(30%) ◆국비△58, 도비△14, 군비△53

## □ 부서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3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78,527	100	610,894	100	△32,366	△5.30	
기획실	4,975	0.86	8,375	1.37	△3,400	△40.60	
일자리경제실	14,884	2.57	15,324	2.51	△440	△2.87	
자치행정국	소계	233,669	40.39	241,916	39.60	△8,247	△3.41
	총무과	67,306	11.63	68,929	11.28	△1,623	△2.35
	민원봉사과	2,181	0.38	2,435	0.40	△254	△10.43
	문화관광과	21,032	3.64	21,599	3.54	△567	△2.63
	주민복지과	34,869	6.03	35,204	5.76	△335	△0.95
	가족행복과	87,086	15.05	91,378	14.96	△4,292	△4.70
	환경과	16,153	2.79	16,764	2.74	△611	△3.64
	세무회계과	5,042	0.87	5,607	0.92	△565	△10.07
건설산업국	소계	243,801	42.13	252,471	41.33	△8,670	△3.43
	재난안전과	47,146	8.15	48,028	7.86	△882	△1.84
	건설과	65,219	11.27	66,640	10.91	△1,421	△2.13
	도시재생과	16,727	2.89	17,850	2.92	△1,123	△6.29
	산림편백과	23,269	4.02	24,803	4.06	△1,534	△6.18
	교통에너지과	22,144	3.83	24,999	4.09	△2,855	△11.42
	농업축산과	54,813	9.47	55,137	9.03	△324	△0.59
	농업유통과	14,483	2.50	15,014	2.46	△531	△3.54
보건소	소계	14,431	2.49	14,501	2.37	△70	△5
	보건정책과	8,648	1.49	8,688	1.42	△40	△0.46
	건강증진과	5,783	1.00	5,813	0.95	△30	△0.52
농업기술센터	소계	8,321	1.44	8,625	1.41	△304	△3.7
	농업지원과	4,449	0.77	4,664	0.76	△215	△4.61
	농업기술과	3,872	0.67	3,961	0.65	△89	△2.23
체육사업소	4,830	0.83	5,040	0.83	△210	△4.18	
맑은물관리사업소	41,008	7.09	50,668	8.29	△9,660	△19.06	
평생교육센터	6,190	1.07	7,462	1.22	△1,272	△17.04	
의회사무과	908	0.16	931	0.15	△23	△2.42	
읍면	5,510	0.97	5,581	0.91	△71	△0.06	

## □ 부서별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합계			△17,600	
일자리경제실	자체	공무직 인건비(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37	
총무과	자체	읍·면민의날 행사지원	△25	
	자체	보수	△911	
문화관광과	보조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	△100	
	보조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400	
주민복지과	자체	공무직 인건비(통합사례관리사, 자원봉사코디네이터)	14	
	자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100	
가족행복과	보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5	
	보조	북부권 어린이집 신축(키즈레일)	83	
	보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	9	
	보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10	
	자체	노인효도권 지원	△114	
	자체	노인일거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등	△515	
환경과	자체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폐기물 처리시설)	△200	
세무회계과	자체	현관 및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공사	△500	
재난안전과	자체	6.27~7.27. 호우 피해 복구(예산성립전)	229	
	자체	장성읍 가작소하천 하천제방정비사업	△30	
	자체	장성군 하천제방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0	
	자체	북하면 성암리 용동소하천 하천제방 정비사업	△100	
	자체	장성읍 장성천 수변길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00	
	자체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	△250	
건설과	보조	지역개발사업	80	
	자체	황룡면 필암리 선촌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450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도시재생과	자체	청운지하차도 철도횡단 개설공사	△3,000	
산림편백과	보조	3~4월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예산성립전)	20	
	보조	북일면 임도 교행차로 설치사업	30	
	자체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	△900	
	자체	잔디예지물 처리 부지매입	△1,000	
교통에너지과	보조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48	
	자체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100	
	자체	구)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0	
	자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360	
농업축산과	보조	럼피스킨 방역대책비(예산성립전)	21	
	보조	재해 피해 특별위로금(예산성립전)	39	
	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93	
농업유통과	보조	이상저온 및 서리 농업피해 복구지원(예산성립전)	172	
	자체	재단법인 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0	
	자체	사찰음식 체험시설 타당성 검토	△55	
보건정책과	보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0	
건강증진과	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10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 사업	△250	
	보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6,800	
	자체	장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310	
	자체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사업	△1,800	
평생교육센터	자체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출연금)	△1,000	

## IV.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324억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
- 이는 지방교부세의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324억원의 감액된 예산안이 제출된 가운데 신규 및 증액으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으며, 이월사업을 줄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써야 하겠음.